

동일 전기용품에 대한 이중규제의 허와 실



한국PL상담센터협의회 회장 나경수 (02)579-3291 jih@ekesa.or.kr

1.배 경

동일 전기용품에 대하여 그 제품의 기능평가를 2중,3중으로 받고 있음으로 이의 개선이 요망됨.

달리함에 따라 적용법률을 달리하여 각각의 법에서 따로 규제함으로 제조업체는 불필요한 규제를 2중.3중으로 받고 있음으로 이의 개선이 요망됨.

(1) 전기 맛사지기

(가) 규제현황

적용법률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약 사 법
주 무 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제품기능 평 가	o 가정용 건강 보조기 (전동력응용기기)	 경미한 근육통증 완화 (의료용 바이브레이타)
규 제	 목적 : 불량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감 전등의 위험 및 장해발생 방지 (법 제1조) 방법 : 안전인증 	ㅇ목적 : 질병의진료,치료,경감처치 또는 예 방(법 제2조 9항) ㅇ방법 : 제조업 허가, 제조품목허가인증 (허가)

인증(허가) 기 관	○ 전자파장해공동연구소 ○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 산업기술시험원 ※산자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안전인증지정기관(법 제3조) (제조업체 임의로 3개기관 中 택일 인증신청)	o 식품의약품안전칭 ※ 법 제26조(제조업의 허가등)에 외한 허가 관청
시험기관 및 비 용	o 상동(3개 인증기관) 인 증 료 : 60,000원 - 공장심사 : 200,000원 - 시 험 료 : 2,426,180원 계 : 2,686,180원	o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o 산업기슬시험원 ※ 의료용구의 하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등록)에 의한 등록시합기관 - 시험기준 및 방법승인 : 30,000원 - 시 험 료 : 3,152,000원 - 공장심사 : 1,200,000원 - 제조업 및 품목허가 : 10,000원 계 : 4,392,000원
인증(허가) 소 요 일	o 45일 - 인증처리기간 : 15일 - 시험소요일 : 30일	o 124일 - 시험기준및방법승인(식약청):59일 - 시험소요일(등록시험기관): 30일 - 제조업 허가: 25일 - 제조품목 허가: '0일

(나) 문제점 검토 및 개선의 당위성

(문제점)

- 동일 제품에 대하여 유사한 절차로 2중 규제 함으로 제조업체에 대한 시간, 비용등의 낭비와 생산성 및 경쟁력 지하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시험과 약사법에 의한 시험이 모두 제품의 사용상 안전시험임(약시법에 의한 시험 내용에 치료 예방에 관한 시험 없음)
- ㅇ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제품인증(구, 형

식승인)은 1970년도부터 제품이 국내 생산된 이래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으나

 약사법에 의한 제품하가는 1986.2.21 보사무 고 시로(제86-12호) "의료용 바이브레이타"가 고 시 되었으나 그간 동법에 의한 하가 시험이 없었 던 것을 15년이 경과한 2001.1.30~31 양일간 식 품의약품안전청, 관세청 합동으로 의료용구 동 관업무 설명회"를 개최하여 전기맛사지기가 의 료용 바이브레이타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다음날(2001. 2. 1)부터 규제를 실시하고 있



(2중 규제 단일화 효과)

- ㅇ 정부 행정의 효율 중대
- 중복규제를 단일화하므로 정부 행정서비스 향상, 인력 절감 및 예산절감에 기여
- 전기맛사지기 제조업체에 대한 신속한 행정 편의 제공으로 경제활동의 활성화와 정부의 신뢰 증진
- 인증(허가)제도를 단일화하므로 인력·비용 및 시간 절약
- 년간 329백만원 절약
- (2) 비디오폰(일명 : 홈오토메이션기기)
- (가) 규제현황

- 업체당 평균 22백만원 손실 절감
- 4,392,000원/건당 × 5모델 × 15업체 = 329,400,000원
- 제품 출하기간 단축 : 제품별로 출하시기를 각각 2개월 이상 단축
- 124일(약사법에의한 허가 소요일) 45일 (안전인증 소요일) = 79일
- 절약된 인력, 비용, 시간을 품질 및 생산성향상에 재투입하므로 품질 개선과 국제경쟁력향상

법률적용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소 방 법	전기통신기본법
주무부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제품기능 평 가 (법률소관)	기본기능 : 가정용전기용 품으로 현관(또는 대문)에 도착한 방문객을 비디오로 확인 통화한 다음 문을 열 어 주는 장치	기본기능에 부대기능으로 부착한 "화재감지기"가 소방법에 해당	기본기능에 부대기능으로 부착 한"시내전화기능"이 정보통신기 본법에 해당
규 제	 근거 : 불량전기용품 으로 인한 화재, 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발 생방지(법제1조) 방법 : 안전인증 	o근거 : 소방용기기구등을 제조(수입포함)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부치부 장관의 형식승인을 얻어 야함 (법 50조 1항) o 방법 : 형식승인	 근거: 전기통신기자재의 제조, 판매 또는수입자는 정보통 신부장관의 형식승인을 얻어야 함 (법 제33조의 제 1할) 방법 : 형식승인
인증(승인) 기 관	(인증기관) o 전자파장해공동연구소 o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o 산업기술시험연구원 * 산자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안전인증기관 (법 제3조) - 제조업체는 임의로 3개 기관중 택일 인증신청	(승인 및 검정기관) ㅇ 한국소방검정공사 ※ 소방법 제103조에 의한 특수법인	(승인기관)

|--|

(나) 문제점 검토 및 개선의 당위성

(문제점)

- 유사한 3개 인증(또는 형식증인) 모두를 취득하게 하므로 인력·시간의 낭비, 비용의 증가로 기업의 생산성 및 국제경쟁력 지하
- 생산 후 남기지연 : 1~2주 이상 소요
- 3개 형식승인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품시험 방법은 대부분 동일 또는 유사함 (3개 인증기관 시험항목 비교표 별침 참조)
 - 소방법: 1개 항목(가스누출 감지기능 반복 작동시험) 만이 별도이나, 이시험은 접속단 자의 개폐 장치동작(ON,OFF) 시험만을 확 인하는 것으로서 시험방법상 특별한 의미가 없음
 - 전기통신기본법: 안전시험이 모두 전기용 품안진관리법에 의한 안진인증시험 방법에 포함되어 있어 2중시험을 하고 있으며 단 지, 송·수화성(전화기 기능)만을 확인하는 시험이 다름

○ 소방법에 의한 형식승인 대상체품이 이법 시 행광 제36조(형식승인 소방용기계기구등)에 시 형식승인대상으로 "수신기"는 규정되어 있으나, 이긴 관련실시 하고있는 "간이형수신 기"는 행정자치부 고시('99. 8. 3: 1999-49 호)에 규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제품 표시 사항에 "본 제품은 법정시설로 인정할 수 없 다"는 문구를 별도로 표시도록 한 것은 법 강 제성 여부가 불명하다고 할 수 있음

(개선방향)

- 手소방법
- 형식승인 대상품으로 소방법시행당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신기"에 "간이형주신기"는 포함할 수 없도록 함(현재에는 고시로추가 규정)
- 간이형 수신기 제품표시 사항에 '본제품은 법 정시설로 인정 할 수 없다' 는 문구를 표시합
- 모는 간이형수신가 부분만의 부분품을 사전에 별도로 형식승인하여 비디오폰 제품 조립후 완제품에 대한 중복사험을 억제 도목함



- ② 전기통신 기본법
- 전기통신법에 의한 홈오토메이션기기(HA)
 에 대한 형식승인은 전화기능의 송수화기능
 부분만을 사전에 별도로 시험하여 형식승인
 하고 완제품 조립후 중복시험을 억제 토록함

(기대효과)

- ① 정부행정의 효율증대
- 중복규제를 억제하므로 행정서비스 향상, 인 력절감 및 예산절감
- 민원인(제조업체)에게 불필요한 2중의 인증 강요를 배제함으로 민원의 편의 및 신뢰증진
- ② 생산업체의 인력비용 및 시간절약
- 홈오토메이션기기를 소방법대상에서 제외하
 므로 시험수수료 부담 년간 20~30억원 절약
- 평균 1업체당 년간 1억원 이상 절약(관련업체: 15개 중소기업)
- 제품출하 기간단축(1~2주)
- 중복되는 인증 및 검사의 폐지로 민원불편 해소
- 절약된 인력, 비용, 시간을 품질 및 생산성 향상에 재 투입하므로 품질의 개선과 국제 경쟁력 향상

【참고】

- □ 산업생산시설과 제품생산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업무는 산자부 소관임
- 예 : 차량, 항공기, 선박, 광통신등 통신케이블, 철근, 시멘트, 벽돌 건축자재등
- ※ 부처별로 유사하다고 주장하면, 현재 산업자 원부가 관장하고 있는
- ㅇ 자동차, 선박, 항공기등은 → 건설교통부
- 전화선, 통신케이블등은 → 정보통신부
- ㅇ 경운기, 농기계, 비료등은 → 농수산부
- 연필, 볼펜, 칠판등 학습용 기자재는 → 교육인적자원부 등에서 생산과 제품을 책임,
 관리하여야 한다는 모순이 있음
- 첨 부 : 1. 전기맛사기 시험항목 비교 검토 1부. 2. 3개 인증기관 시험항목 비교 1부. 끝 ♣